라틴아메리카 원주민 인권: 문화적 다양성의 지향*

김기현(선문대학교 스페인어중남미학과)**

- Ⅰ. 서론
- Ⅱ. 원주민 그들은 누구인가?
- Ⅲ. 국가의 원주민 정책
- IV. 문화적 다양성으로 본 원주민 인권
- V 격류

I. 서론

라틴아메리카 원주민은 아메리카 대륙의 원래 주인이었으며 스페인에 의해 정복된 이후에도 지금까지 자신의 삶과 문화를 지속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존재는 끊임없이 위협받아 왔으며 사회적으로는 소외되어 왔다. 국가의 통합정책 하에서 그들의 존재 가치는 무시당했으며, 사회적으로 라틴아메리카에서 원주민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거의 대부분 빈곤과 소외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게다가 그들은 이러한 삶을 거의 500년간 숙명적인 것으로 체념하며 받아들여 왔다.

그러나 500년간의 말살과 통합정책에도 불구하고 라틴아메리카 전 체에서 원주민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약 9% 수준을 유지하

^{*} 이 논문은 2004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4-072-BM3062)

^{**} Ki-Hyun Kim(Sunmoon University, Department of Spanish Language and Latinamerican Studies, drkhkim@sunmoon.ac.kr), "Human Rights of Latinamerican Indigenous Peoples: Toward Cultural Diversity".

고 있다. 오히려 최근에는 그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게다가 페루, 에콰도르, 볼리비아, 과테말라와 같은 나라에서는 원주민이 여전히 전체 인구에서 다수를 차지한다. 심지어 라틴아메리카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멕시코에서 조차도 남부지역에서는 원주민 인구가 역시 다수를 점하고 있다.

이러한 수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까지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 없이 소외된 계층으로 살아왔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라틴아메리카의 원주민은 달라지고 있다. 그들은 이제 새로운 사회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수적 비중에 기반을 두고 이들이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함에 따라 원주민들은 이제 라틴아메리카정치사회 전반에 있어 중요한 세력으로 등장했다.

특히 안데스 유역 국가들에 있어서 원주민의 정치적 영향력은 한 정권의 탄생과 유지에 거의 결정적이다. 따라서 21세기 라틴아메리카 정치를 이해하는데 있어 인종적 문제 특히 원주민 변수는 반드시고려되어할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종족1)의 정치"(Marbury-Lewis 2002)가 이제 더 이상 낯선 표현이 아니다.

다양한 정체성을 지닌 원주민 종족그룹(grupos étnicos)은 근대화의 남겨진 찌꺼기도 아니며 단순히 관광과 흥미 위주의 민속적 존재도 아니다. 그것은 라틴아메리카의 정치와 사회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며 따라서 원주민에 대한 완전한 이해 없이 라틴아메 리카 사회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미래의 프로젝트를 만드

¹⁾ ethnic group을 적절한 우리말로 옮기는 것은 고민스러운 일이다. 같은 지역에서 오랫동안 공동생활을 함으로써 언어나 풍습이 유사한 인간집단을 민족이라 하고, 조상이 같고 언어와 풍습이 같은 사회집단을 종족이라 하며, 피부색 등 신체적 특징에따라 구분되는 사람의 집단을 인종이라 부른다면 ethnic group에 대한 가장 적절한 번역은 아마 종족이 될 것이다. 종족은 사회문화적 특징까지 고려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신체적 특징에 근거한 분류인 인종과는 다르다. 또한 민족의 개념이 종족과 유사하기는 하나 민족은 하나의 종족으로 이루어 질 수도 있지만 다양한 종족이 합치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종족과는 구별된다. 종족은 넓은 의미의 혈연집단으로 문화적 특징을 공유하는 집단의 개념으로서 부족(tribe)과 가장 유사하나 부족이라는 용어가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식민지 지배 지역에서 흔히 사용된 개념으로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1960년대 이후로는 종족이라는 개념이 부족을 대신해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우리도 이 글에서 ethnic group을 우리말로 종족이라고 옮길 것이다.

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요구가 단순히 과거의 이데올로기적 계급투 쟁과는 또 다른 성격을 띤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원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진정한 원주민의 인권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물음 을 우리는 당연히 제기해야 할 것이다. 원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 가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에 따라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할 때 원주민들의 삶도 진정으로 향상되고 국가적으로 정치적 안정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해를 위해 우리는 과거의 진보나 근대화 이데올로기 그 리고 계급정치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인종적 문화적으로 다원주의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자식이 공부를 잘하는 것만이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 유일한 길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운동을 하거나 만화 를 그리더라도 그것 또한 공부를 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치 있는 일이며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두는 것이 그 아이를 위해 진정으로 행복한 길이 될 수 있다는 열린 사고방식이 요구된다. 즉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원주민의 인권을 이해하는 데도 그대 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를 두고 여기서는 원주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 즉 원주민의 인권을 문화적 다양성의 지향이라는 차원에서 다루고자 한다. 즉 현 사회에서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신 자유주의 논리들 예를 들어 시장과 경쟁, 개인소유권, 중앙정치에서 의 정치성 대표성 확보, 선거민주주의, 보편적 인권, 스페인어 교육 등등이 과연 원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비판 적으로 짚어보고 나아가 그들이 실제로 원하는 것의 구체적 내용들 을 하나씩 살펴보게 될 것이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우선 원주민은 누구인가라는 기초적 의 문에 대한 답을 먼저 제시하고 그러한 개념정의의 바탕 위에서 원주 민의 수적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으로 지금까 지 국가가 원주민 문제를 다루어온 방식을 논문의 주장과 관련하여 비판적으로 살펴본 다음 마지막으로 오늘날 원주민 자신들의 요구 즉 문화적 다양성에 기반을 둔 원주민 인권의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Ⅱ. 원주민 그들은 누구인가?

Ⅱ.1. 원주민 개념 규정

인종적 그룹의 개념은 명백하지 않다. 학자에 따라 시대에 따라 그리고 나라에 따라 원주민의 개념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나타난다. 일부 국가-특히 페루와 볼리비아-에서 원주민의 개념은 인종적이기 보다는 사회적 의미로도 사용된다. 예를 들어 볼리비아에서 농민계급(campesidnado)이나 농민(campesino)이라는 용어는 말 그대로 농사짓는 사람들을 의미하기보다는 인디오 혹은 원주민을 의미한다. 페루에서도 1969년 벨라스코 알바라도 대통령의 토지개혁이 단행될때 원주민 혹은 인디오는 농민이라는 용어로 대체되어 불려졌다. 과테말라에서도 국가는 항상 원주민들을 하나의 계급으로 취급했다. 이렇게 원주민이라는 용어는 하나의 인종적 단위를 의미하기보다는 사회적 계급 즉 농민계급의 의미를 보다 강하게 내포하고 있었다.

그러나 원주민의 개념을 이렇게 사회적 계급화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한다.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나라에서 원주민들이 농민인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모든 농민이 원주민은 아니다. 또한 모든 원주민이 농민이지도 않다. 사회계급이나 직업을 정의하기 위해 인종적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분석적 전망을 좁게 만든다. 나아가 원주민이 농민일 수도 있고 또한 농촌의 다른 계층에 속할 수도 있고 혹은 도시의 빈곤층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80년대 이래 원주민 개념정의는 사회적 성격보다는 인종적 성격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이러한 개념 규정에 따르면 원 주민을 분류하는 특징으로 공동의 지리적 기원, 신체적 특징, 언어, 종교, 관습, 민속, 음식, 정치사회조직, 공동경작지 등을 들 수 있다. 그중 특히 언어는 원주민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요소이다. UN 또한 언어-특히 태생언어-가 인종적 그룹을 나 누는 가장 중요한 변수임에 동의한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스페인어가 지배적 언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주민어는 오랜 세월 동안 살아남 아 오늘날 원주민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를 통한 원주민의 정의 또한 그것대로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원주민어를 말하지 못하는 원주민과 원주민어를 말할 수 있는 비원주민들은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나아가 언어에 따른 규정에서 태생언어를 따질 것인가 아 니면 현재 원주민어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따질 것인가도 문제가 된다. 태생언어를 택할 경우 태생언어를 스페인어로 선언한 원주민 후손들이 배제되며, 원주민어를 말할 수 있는 능력으로 판단할 경우 에는 원주민어를 말할 수 없는 원주민들이 배제된다. 또한 과라니어 를 국가 공식언어로 채택한 파라과이에서는 원주민이 아닌 많은 사 람들이 과라니어를 말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언어는 원주민을 규정 하는 정확한 개념이 될 수 없다.

두 번째로 고려되는 요인은 지리적 위치이다. 즉 어느 곳에 사느 냐에 따라 원주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원 주민 인구가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나라 혹은 인디언 보호구역과 같은 제도가 있는 나라에서 매우 유용한 방법이기는 하다. 그러나 대게 이런 방법은 원주민이 아닌 사람을 원주민으로 분류하거나 아 니면 원주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결국 원주민의 규정은 자기인식의 영역에 맡겨진다. 자기 동일성, 혹은 자기 귀속성은 오늘날 언어적 분류와 함께 원주민을 규정하기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다.

<표 1> 주요 국가 인구조사 시 인종을 정의하는 방식

| | 인구조사년도 | 인종구분을 위해 사용된 방식 |
|-------|--------------|-----------------|
| 볼리비아 | 1976,1988 | 현재 사용언어 |
| 콜롬비아 | 1973, 1985 | 자기인식과 지리적 위치 |
| 과테말라 | 1973,1981 | 자기인식 |
| 온두라스 | 1988 | 현재 사용언어 |
| 멕시코 | 1988, 1990 | 현재 사용언어 |
| 파나마 | 1980, 1990 | 현재 사용언어 |
| 파라과이 | 1981, 1982 | 지리적 위치와 자기인식 |
| 페루 | 1972 1981 | 태생언어 현재사용언어 |
| 베네수엘라 | 1981,1982 | 지리적 위치와 자기인식 |

출처: Psacharopoulos and Patrinos 1996, 26

소수인종 차별금지와 보호를 위한 유엔 소위원회(The United Nations Sub-Commission on the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nd Protection of Minorities)는 원주민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원주민 공동체, 원주민 그리고 그 종족들은 그들의 땅에서 외부세력의 침략과 식민지화 이전에 발전했었던 사회와의 역사적 연속성을 가지며, 나아가 그 땅 혹은 그 일부에서 사회의 *현재 지배적 세력과는 자신들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현재 사회의 피지배적 부분을 형성하고 있지만, *조상전래의 땅과 인종적 정체성*-문화적 형태, 사회적 제도 그리고 고유의 법적 체계 등-을 자신들의지속적 존재의 기초로서 보존하고 발전시켜 미래세대에게 남겨주려는 사람들이다"²⁾(Van Cott 2000, 208, 재인용).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원주민으로 규정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첫째, 식민지 이전 원주민 사회와의 역사적 연속성 둘째, 피지배자로서의 사회적 신분 셋째, 현 지배사회와는 다른 문화적 차별성

²⁾ 밑줄은 강조를 위해 저자가 임의로 표시하였음.

에 대한 자의식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문화적 차별성에 대한 자의식 즉 문화적 자기 귀속(self-ascription)은 UN에서도 역시 원주민을 정의 하는 결정적 요소로 고려되고 있다.3)

그러나 원주민에 대한 자기귀속성의 정의 또한 역시 약간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한 예로 페루와 볼리비아에서 개혁주의 정부는 대다수가 원주민들인 농민들 사이에서 공동체적 집합적 경작체제를 이식하면서 원주민들로 하여금 자신의 분리적 정체성에 대한 의식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볼리비아와 페루에서 열대 저지대의 원주민들은 자신 스스로 원주민이라 규정하는 데 거리낌이 없는데 비해 아이마라나 께추아어를 말하는 농민들은 대부분 원주민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스스로를 원주민이라 규정하는 것을 주저한다.

반대로 과테말라처럼 공동체 농업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원주민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보다 강하게 표현한다. 이런 현실을 바탕으로 과테말라에서는 원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마야인으로서의 공동의 정체성을 발전시키고 있다. 그로 인해 대부분의 과테말라 원주민들은 우선 자신의 언어적 공동체- 예를 들어 끼체(K'iche)족, 깍치껟(Kakchiquel)족-으로 정의되고, 다음에는 보다 광범위한 정체성인마야인으로 정의되며, 마지막으로 과테말라인으로 규정된다.

원주민 정체성의 자기규정화는 이러한 국가적 상황에 따른 차이뿐만 아니라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최근원주민 정체성에 대한 자기규정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 것도 따지고보면 그러한 원주민으로의 자기규정이 국제적 지원을 받을 가능성을 높임에 따라 경제적 이익의 가능성이 보다 많이 주어지기 때문이기도 하다(Plant 2002, 214).

원주민의 정의에 보다 복잡함을 더해주는 것은 전통적으로 농촌의 원주민공동체에 거주하다 도시로 이주한 원주민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농촌에서의 인구성장, 산업 화집중으로 인한 농촌소외의 심화, 상업 농업의 발달로 원주민 공동

³⁾ 라틴아메리카 원주민 인권과 관련하여 가장 영향력 있는 국제기관 중 하나인 국제 노동기구(ILO) 또한 원주민의 정의에 있어 자기 동일시(self-identification)의 인식기준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들고 있다.

체 땅 잠식 게다가 게릴라 운동의 확산으로 인한 농촌 사회에서의 폭력적 갈등 격화 등등의 이유로 농촌 원주민 공동체 구성원들의 대 대적인 도시로의 이주가 발생했다.

이들 도시 이주 원주민들은 공간적으로 원주민 공동체와 멀어져 비록 매우 불리한 조건이지만 점차적으로 세계화된 시장에 가입함으 로써 원주민 농민의 전형적 모습에서 탈피하고 있다. 이들의 이러한 변화는 원주민의 정체성을 규정하는데 보다 복잡함을 더하고 있다.

이런 모든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결국 원주민의 규정은 사용언어를 중심으로 하는 외견적 특징에 따라 1차적으로 판단되고 결국에는 자기 귀속성이라는 요인에 의해 최종적으로 선택될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

Ⅱ.2. 원주민 수와 분포

라틴아메리카 원주민 수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알 수 없다. 그것은 평가 방법에 따라 다르고 출처에 따라 다양하며 조사 시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나 대략 그 수를 따져보면 라틴아메리카 전체 5억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게는 6% 많게는 9%로 정도이고 인구수로 보면 3천만에서 4천5백만 정도로 추정된다.

라틴아메리카의 원주민은 19세기, 20세기 두 세기에 걸친 지속적인 원주민 말살정책과 통합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심지어 80년대까지 감소세였던 원주민의 수가 최근에는 오히려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기까지 하다.

이렇게 이들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결코 적지 않지만 그들의 중요성이 보다 부각되는 것은 이들이 일부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 때문이다.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우루과이와 카리브의 일부 섬 나라들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국가가 원주민 인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원주민의 약 85% 이상은 여전히 과거 마야 문명과 잉카 문명의 중심지였던 중앙아메리카나 중부 안데스 유역 국가들에 집중되어 있다.

<표 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2000년 과테말라와 볼리비아에서 원주민 수는 전체인구의 각각 66%와 71%로 과반수가 훨씬 넘으며, 에콰도르와 페루의 원주민 비중도 각각 38%와 47%로 거의 과반수에 육박한다. 그리고 비록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원주민의 비중이 14.4%에 불과하지만 그 절대적 수로는 가장 많은 원주민이 살고 있는 멕시코의 경우 또한 원주민들이 일부 주에 집중4)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에서 원주민 수는 역시 거의 과반수에 달한다. 따라서 이러한 나라들에서 원주민 문제는 단순히 소수인종의 문제가 아니라 범국민적 차원의 문제가 되고 있다.

| <班 2> | 라틴아메리카 | 주요국가 | 원주민 | 인구수 |
|-------|--------|------|-----|-----|
|-------|--------|------|-----|-----|

| 국가 | 1970년대 | 1980년대 | 2000년 |
|-------|-----------------|-------------------|-----------------|
| 当生 | 인구수(%) | 인구수(%) | 인구수(%) |
| 멕시코 | 12,000,000 (14) | 12,000,000 (14.2) | 13,700,000 (14) |
| 페루 | 9,300,000 (47) | 9,100,000 (40.8) | 12,200,000 (47) |
| 과테말라 | 5,300,000 (66) | 3,900,000 (43.8) | 7,500,000 (66) |
| 볼리비아 | 4,900,000 (71) | 4,150,000 (56.8) | 5,900,000 (71) |
| 에콰도르 | 4,100,000 (43) | 3,100,000 (29.5) | 4,800,000 (38) |
| 칠레 | 1,000,000 (8) | 550,000 (4.2) | 1,200,000 (8) |
| 콜롬비아 | 600,000 (2) | 300,000 (0.9) | 800,000 (1.8) |
| 브라질 | 300,000 (0.2) | 225,000 (0.2) | 700,000 (0.4) |
| 베네수엘라 | 400,000 (2) | 150,000 (0.8) | 200,000 (0.9) |
| 파라과이 | 100,000 (3) | 80,000 (1.9) | 100,000 (1.5) |
| 전체a | 38,000,000 | 33,555,000 | 47,100,000 |

출처: Psacharopoulos and Patrinos 1996, 27-28; The Economist 2004, 재인용 a: 원주민의 수가 그다지 중요한 비중을 나타내지 않는 나라는 전체 합계에서 제외함. (위의 국가 외에도 원주민 수가 십만이 넘는 나라로는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파나마, 온두라스 등이 있다)

^{4) 1980}년 멕시코 국립 역사인류학 연구소(INAH)의 통계에 따르면 멕시코의 429개 시에서 원주민 인구가 다수를 차지했다. 이러한 시들 중 217개가 오아하카주에 있으며, 유카탄주에 74개, 푸에블라주에 43개, 베라크루스주에 33개 그리고 치아파스주에 26개가 있다. 따라서 멕시코에서는 이러한 주들에 원주민들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수 있다. 절대적 수로 보더라도 오아하카주가 1,208,821명으로 가장 많고, 치아파스주가 885,605명으로 그 다음이며, 베라크루스 주가 704,891, 유카탄주가 628,945, 푸에블라주가 611,388로 그다음을 잇는다. 주 전체 인구에서 원주민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면 유카탄 주가 40%이상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오아하카주와 킨타나루주가 30% 이상, 치아파스주가 20% 이상으로 나타난다(Adams 1994, 188-189, 재인용).

마지막으로 원주민을 언어별로 분류하면 브라질에 208개의 언어그룹이 존재하여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페루에 85개, 멕시코 72개, 베네수엘라 40개, 볼리비아 38개 등의 순이나, 만 명 이상이 말하는 언어의 수로 계산하면 멕시코가 37개 언어로 1위, 페루가 27개로 2위, 과테말라가 15개로 3위순으로 나타난다. 원주민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나라들만 언어 분포에 따라 가장 많이 쓰는 언어 3위까지의 비중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 3〉과 같다.

<표 3> 주요국 원주민 언어 분포도

| | 언어 | 원주민인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
|------|-----------------|-----------------------|
| | 께추아(Quechua) | 39 |
| 볼리비아 | 아이마라(Aymara) | 24 |
| | 구아라니(Guaraní) | 1 |
| | 끼체(Quiché) | 15 |
| 과테말라 | 깍치껠(Cakchiquel) | 10 |
| | 맘(Mam) 마야(Maya) | 8 |
| 궤교 | 께추아(Quechua) | 30 |
| 페루 | 아이마라(Aymara) | 22 |
| 멕시코 | 나우아뜰(Nahuatl) | 23 |
| | 마-야는(Maya) | 14 |
| | 믹스떼꼬(Mixteco) | 7 |

출처: Psacharopoulos and Patrinos 1996, 32-35.

Ⅲ. 국가의 원주민 정책

라틴아메리카에서 원주민의 역사는 한마디로 억압과 착취의 역사였다. 여기서 그러한 500년간 수탈의 역사를 모두 언급하는 것은 이

글의 목적도 아니며 또 여기서 그것을 다 언급하는 것도 불가능하 다. 다만 이 장에서는 오늘날 라틴아메리카 원주민 인권을 다루기 위해 집어보아야 할 중요한 역사적 맥락만을 간단히 언급하는 것으 로 그치고자 한다.

Ⅲ.1. 식민지 시대: 분리정책

식민지 시기 동안은 분리정책 모델이 인종적 차이를 유지하기 위 해 제도화되었다. 이것은 백인과 인디오5)들에게 각각 다른 법제도와 지리적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백인이 거주하는 곳과 인디오가 거주하는 마을이 각각 다르게 존재했는데 이렇게 인디오들을 한 마 을에 집중시켜 놓은 것은 그들의 노동력을 활용하고 포교를 보다 쉽 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였다.

라틴아메리카 전체를 통해 식민지 시스템은 인디오들에게 군대의 무로부터 면제, 공동경작 토지의 부여와 같은 특별한 법적권한을 제 공함으로써 이들을 "보호"한다는 명분 하에 다른 한편으로 노동력의 강제적 착취와 같은 방법을 통해 인디오들을 사회 경제 정치적 계급 의 밑바닥에 위치시켜 놓았다.

식민지 체제는 인디오들의 정치적 복종과 경제적 착취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이러한 구조는 결과적으로 "열등한 인디오" 이데올로 기에 기초를 두고 법제화 되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에 따르면 인디 오들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통치할 능력이 부족함으로 그들은 그들에 대해 포교와 통제의 책임이 있는 스페인 사람들에 의해 위탁 물로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동시에 스페인 사람들은 인디오들은 본질적으로 야만적이기 때문 에 그들의 관습은 "인간적이고 성스러운 법"에 의해 통제와 제한이 필요하다는 믿음을 가졌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인디오 마을에 대한

⁵⁾ 이 장에서 원주민이라는 표현을 대신해서 원래 그대로의 인디오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는 것은 단지 역사적 사실에 대한 현장감을 주기 위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

통제를 원활히 하기 위해 인디오들에게 약간의 자치적 권한이 주어 졌는데 그로 인해 작은 범죄에 대해서는 인디오마을의 자치위원장 (alcalde)이 독자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가능했다. 물론 보다 큰 범죄는 스페인의 지방 행정관(corregidor)에게로 넘어가야 했다.

어쨌든 식민지 시대 동안 인디오들은 백인들에 의한 노동력 착취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단위로 고립됨으로써 최소한 자신의 문화와 사회적 조직들을 유지할 수는 있었다.

Ⅲ.2. 독립이후: 동화(assimilation)정책

라틴아메리카가 19세기 초 스페인과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했을 당시 이 지역 인구의 다수는 여전히 인디오와 흑인들이었다. 특히 스페인계 아메리카에서 백인과 인디오의 비중은 각각 18.2%와 41.7%로 여전히 인디오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표 4> 초기 라틴아메리카 인종구성

| | 스페인계 아메리카 | | |
|-----------|-----------|---------|--|
| | 1570(%) | 1825(%) | |
| 백인 | 1.3 | 18.2 | |
| 혼혈인(메스티소) | 2.5 | 28.3 | |
| 흑인 | | 11.9 | |
| 인디오 | 96.3 | 41.7 | |
| 합계 | 100.1 | 100.1 | |

출처: Skidmore and Smith 1984, 28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은 여전히 스페인 식민지 지배계급의 직계 후손인 끄리오요들이 장악했음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라틴아메리카 독립의 주체는 라틴아메리카에서 태어나 이 곳에서 정착한 백인들인 끄리오요들이었다. 독립 이후 라틴아메리카의 새로운 권력엘리

트가 된 끄리오요들은 정치 경제 제도를 그들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 갔다. 따라서 정복 이래 백인들에 의한 인디오의 착취와 억압구조는 독립 이후에도 변함없이 이어졌다. 독립 이후에도 인디오들은 정복 이래 그들이 속했던 사회의 최하층 계급에서 여전히 한 발짝도 벗어 날 수 없었다. 게다가 19세기 국가적 프로젝트의 작성에 있어 인디 오들은 완전히 배제되었으며, 그로 인해 식민지 시대에 그나마 부여 되었던 "보호" 장치조차 독립 이후에는 사라지게 되었다.

19세기 자유주의와 평등주의 사상에 따라 법체계를 단일화하고, 법적으로 인종간의 차별을 폐지하고, 일부 경우 인디오들에게 헌법 상 시민권을 부여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이런 법적 변화가 백인 농장 주에 예속된 인디오들에게 미친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끄리오 요들은 독립 이후 권력의 공백 상태에서 다수의 원주민들에게 선거 권과 같은 국민주권을 완전히 인정하는 것은 사회질서 붕괴의 우려 가 있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법체계의 단일화로 인해 인디오들이 향유했던 인디오 공동 체 토지의 양도불가와 같은 원칙이 폐지됨으로써 집합적 토지 소유 권이 소멸되었고 나아가 헌법에서 인디오라는 표현이 사라짐으로써 실제 존재했던 문화적 다원성이 부정되기도 했다. 그로 인해 인디오 들의 언어와 문화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인디오는 식민지 시대의 "열등적 자치체"에서 독립 이후 법적으로 "동등한 예속체"로 전락했다.

농업 중심의 1차 상품 수출경제의 활성화는 농민들의 전통적 경작 지를 상업작물을 재배하는 플랜테이션농장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인 디오들은 자신의 땅을 잃고 날품팔이 농업노동자로 전략하고 말았 다. 식민지 당국이 인디오들에게 그들 자신의 생존을 위해 경작하도 록 공동소유 형태로 제공했던 토지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대토지 소 유자들의 손에 집중되었다. 그에 따라 인디오들은 날품팔이 노동자 가 되든지 아니면 채무계약에 의한 농노가 되든지 아니면 개간이 어 려운 황무지 산악지역이나 정글로 들어가든지 선택해야만 했다.

또한 19세기말부터 전개된 국가적 통합시도6)에도 불구하고 실제

로 사회는 여전히 인종적으로 계급적으로 뚜렷이 분리되어 있었다. 투표권 획득에 있어 재산과 교육 수준의 평가는 인디오들의 국가정 책결정 과정에의 참여를 원천봉쇄하였다. 경제적으로 평등주의 사상이 원주민의 공동소유 형태를 붕괴시키고 백인에 대한 원주민의 종속을 심화시키는 한편 정치적으로는 자유주의자든 보수주의자든 여전히 인종차별적 입장에서 원주민들의 정치적 권한을 제한했다.

결국 인디오들은 시민으로서의 이익과 권한에서는 배제된 반면 시 민으로서의 의무는 다해야 했으며, 새로운 국가 시스템에 따라 자신 의 전통적 삶의 형태를 포기하고 새로운 시스템에 따라 자신들을 재 조직해야 했고, 또한 새로운 '민족국가'에 충성을 바쳐야만 했다.

Ⅲ.3. 20세기 중반: 통합(integration)정책

이러한 문제점들이 20세기 들어 멕시코 혁명을 시작으로 볼리비아 혁명, 아옌데 정권 등 농민반란이나 혁명운동을 야기하는 근인이 되 었으며 그로 인해 또 다양한 토지개혁이 시도되기도 했다. 이러한 개혁은 실제 원주민?)들에게 약간의 혜택을 가져다주기도 했으나 원 주민 문제가 토지문제로 집중됨으로써 원주민과 토지를 갈망하는 계 급적 성격의 농민과의 차이가 애매해지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8) 1940년대 이전까지 원주민 문제는 인종문제의 범주에서 다루어졌지

⁶⁾ 라틴아메리카에서 모든 국가의 원주민 정책이 동일하게 전개되지는 않았다. 원주민 의 수가 많지 않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19세기 원주민 정책은 백인들이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땅을 확보하기 위한 "섬멸"(annjhilation)이었으며, 역시 원주민 수가 많지 않은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파나마의 원주민 정책은 외따로 멀리 떨어져 사람이 살기 어려운 땅에 보호구역을 만들어 그곳에 원주민들은 몰아넣는 (encapsulation) 것이었으며, 마지막으로 원주민의 수가 많은 국가들에서는 주로 동화나 통합정책이 적용되었다.

⁷⁾ 원주민(indigenous)이라는 표현은 20세기 들어 인디오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이 인디 오라는 표현이 가지는 경멸적이고 인종차별적인 냄새를 완화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⁸⁾ 특히 페루에서 원주민 명칭이 농민(campesinos)으로 전환되는 현상은 가장 뚜렷이 나타났다. 그것은 원주민이라는 용어가 가지는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경우 이 두 표현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1940년대 이후 원주민의 문화적 정체성보다 사회경제적 조건을 강조하기 위해 원주민대신 농민이라는 표현이 보다 널리 사용되었었다(Yrigoyen 2002).

만 이때부터 그것은 더 이상 인종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로 다루어지기 시작했다.(Marroquín 1972, 8) 원주민 개념의 계급화에 따라원주민의 인종적 정의는 사라지고 외모와 피부색에 따른 구분이 부정되었다.9)

20세기의 민족주의 혹은 발전주의 근대화 전략10)은 원주민 정체성의 동화(同化)를 전제로 인종적으로 동질적 사회로의 발전을 추구했다. 그러나 실제 그러한 전략은 원주민들을 근대화의 걸림돌로 파악하고 통합정책을 통해 그들의 존재를 점차적으로 사라지게 하는데목적이 있었다. 그것은 원주민의 문화와 사회적 정체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정책이었다(Stavenhagen 2002, 25).

특히 1940년대 이래 인류학자들은 "인도아메리카"보다는 "메스티소아메리카"에 대해 보다 많이 언급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이들은 20세기 말에는 원주민이나 원주민 문화가 완전히 메스티소화 되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국가의 정책도 그러한 메스티소화를 지향했다. 당시 정부의 원주민 정책은 통신 수단과 교통의 발달 그리고 교육 등을 통한 원주민의 통합을 강조했다.

원주민 통합정책의 핵심은 교육이다. 원주민의 사회적 통합을 위해 학교는 스페인어 교육만을 강조했고 원주민들의 삶과 문화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교육을 실시했다. 이러한 교육정책은 일정 부분 목표한 바를 이루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많은 원주민 학생들을 학교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하고 소외를 보다 심화시키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통합정책은 또한 원주민들의 시장경제로의 통합을 시도했다. 발전 론자들은 원주민들이 기존에 생존을 위한 폐쇄적 농업을 포기하고

⁹⁾ 유카탄에서는 원주민들 특히 도시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은 대부분 메스티소로 불려 지기 시작했고 오직 반란을 일으키는 원주민들만 "반란적 인디오"(indios insurrectos) 라 불렸다.

¹⁰⁾ 발전주의 근대화 전략이란 2차 세계대전 이후 로스토우(Rostow)에 의해 제창되고 중 남미에서는 라틴아메리카경제위원회(CEPAL)에 의해 받아들여진 제3세계 국가 발전 전략으로서 그것은 현재 라틴아메리카 사회를 반봉건반자본주의 사회로 규정하고 이 지역에서 자본주의적 근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봉건적 잔존요소들의 타파 즉 토지개혁을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주장하였다.

새로운 상업작물의 재배, 관광객들을 위한 수공예품의 생산 등을 통해 삶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라틴아메리카의 지배계급은 이렇게 함으로써 원주민들을 제거하고 원주민 없는 국가를 건설하고자 했다. 통합정책 하에서 많은 원주민 공동체들은 토지개혁이 단행될 때 원주민이나 농민 정체성으로 약간의 물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며 또한 원주민 조합주의 공동체들은 패트런적 정치체제 하에서 약간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었다.

Ⅳ. 문화적 다양성으로 본 원주민 인권

Ⅳ.1. 원주민의 사회적 조건: 차별적 구조의 지속

통합정책은 원주민의 삶을 현실적으로 개선하지 못했다. 메스티소 문화로의 통합이라는 전제 하에서 회복된 원주민문화는 단지 피상적 수준에 머물렀고 현실 사회에서의 차별은 여전했다. 물질적 혜택 또 한 실질적 삶의 향상과 불평등의 감소와는 거리가 멀었다. 이러한 차별적 사회 구조의 지속은 원주민들의 요구가 과거와는 다른 차원 에서 제기되게 하는 근원적 요인이 되었다.

통합정책은 실제 원주민의 문화적 정체성을 희생시키는 결과를 야기했다. 비록 메스티소의 문화적 정체성 확립의 한 축으로 원주민 문화는 회복되었지만 그것은 단지 학교, 박물관, 제도 등의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현실 사회에서는 여전히 인종적 차별과 배제의 원칙이 작동함으로써 실제 메스티소 문화적 정체성의 확립에 있어 원주민의 종족성은 부정되었다. "멕시코 정부에 의해 원주민-비원주민 차별이 공식적으로 해체되었다고는 하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차별은 모든 사회를 이분화하며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김세건 2003, 29).

그리고 토지 분배에서 받은 약간의 물질적 혜택조차도 여러 가지 제약들로 인해 지속적으로 원주민들의 삶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는 없었다. 또한 통합정책에도 불구하고 원주민의 계층변화는 거의 일 어나지 않았다. 만약 진정으로 통합정책이 사회적 계층 이동이 자유 로운 열린사회를 보장했다면 원주민들의 상당수가 다양한 사회 계층 즉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소득 수준을 가진 사회그룹에 분포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다양한 교육수준을 지녀야 하고, 관료나 군부에도 상당수가 참여했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고 따라서 인종적 불평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국가기관의 상층부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이나 국가에 의해 보장된 시민권의 조직적 거부와 같은 구조 적 차원에서의 차별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인간관계에 있어서 또는 복지 측면에서 원주민의 평균 수명이 국가의 평균 수준보다 매우 낮 거나 원주민의 문맹률이 국가의 평균 수준보다 높은 점 등 사회의 다양한 측면에서도 인종차별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은 현실이다 (Krotz 2003, 10).

주목할 현상은 전반적인 빈곤과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가 특히 원 주민들에 있어 보다 극단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즉 원주민이 다 른 사회그룹보다 더 빈곤하다는 사실은 빈곤이 더 이상 계급문제가 아니라 인종문제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한 예로 볼리비아에서 도시 거주 조사 대상 인구의 거의 반 (52.6%)이 빈곤층인 데 비해 원주민은 거의 3분의 2(64.3%)가 빈곤층 이었고, 과테말라에서는 같은 조사에서 전체의 65.6%가 빈곤층인데 비해 원주민은 86.8%가 빈곤층으로 나타났으며, 페루에서는 전체 49.7%에 비해 원주민은 79%로, 그리고 멕시코에서는 전체 17.9%에 비해 원주민의 80.6%가 빈곤층으로 나타났다(Davis 2002, 230).

1996년 세계은행의 지원 하에 이루어진 원주민의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한 조사 보고서(Psacharopoulos and Patrinos 1996) 또한 이러한 빈곤과 사회적 불평등 문제의 인종적 성격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아래 〈표 5〉의 인종별 문맹률 차이는 사회적 서비스 즉 교육 기회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나타나는 원주민들의 차별적 지위를 보여준다. 이렇게 원주민은 교육 기회라는 측면에서부터 이미 차별적 구조 하 에서 성장한다. 따라서 이후 원주민들의 사회적 지위가 낮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귀결이기도 하다. 결국 이러한 지표들은 사회적 서비스에 있어서도 인종적인 문제가 핵심에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표 5> 국가별 인종별 문맹률, 1970년대-1980년대

| 국가 | 1970년대 | | 1980년대 | |
|------|--------|-----|--------|-----|
| | 비원주민 | 원주민 | 비원주민 | 원주민 |
| 볼리비아 | 23 | 42 | 14 | 24 |
| 콜롬비아 | 21 | 46 | 16 | 45 |
| 과테말라 | 46 | 87 | 40 | 79 |
| 파나마 | 21 | | 14 | 62 |
| 파라과이 | 20 | | 13 | 70 |
| 페루 | 30 | 50 | | |

출처: Psacharopoulos and Patrinos 1996, 35

2004년 역시 세계은행의 지원으로 연구 발표된 한 편의 보고서 (Hall and Patrinos 2004) 또한 원주민의 차별적 사회구조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선 1994년 이후 원주민의 비중이 높은 5개국 중 볼리비아, 과테말라, 멕시코 3개국에서 전체 빈곤층의 비율이 각각 8%, 25%, 5% 감소한 데 비해 원주민 빈곤층의 감소는 0.1% 이하, 15%, 0.1% 이하에 그쳤다. 이것은 경제회복의 성과가 원주민들에게는 거의 미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평균 학력에 있어서도 원주민과 비원주민의 차이는 여전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아래의 <표 6>은 볼리비아, 에콰도르, 과테말라, 멕시 코, 페루에서 비원주민과 원주민 사이에 나타나는 명백한 학력의 차 이를 보여준다.

3.2년

3.3년

2.3년

국가 비원주민 학력의 차 원주민 볼리비아 9.6년 5.9년 3.7년 에콰도르 6.9년 4.3년 2.6년

2.5년

4.6년

6.4년

<표6> 원주민과 비원주민 평균 학력

5.7년

7.9년

8.7년

출처: Hall and Patrinos 2004, 7

과테말라

멕시코

페루

심지어 원주민과 비원주민 간에는 교육에 따른 사회적 성취도도 다르다. 그것은 1년 교육을 더 받은데 따른 소득 증가의 비율을 비교 해 보면 알 수 있는데 같은 보고서에 따르면 볼리비아, 에콰도르, 과 테말라, 멕시코, 페루에서 비원주민이 1년 교육을 더 받는데 따른 소 득 증가율이 각각 9%, 8%, 13%, 10%, 12%인데 비해 원주민은 6%, 7%, 12%, 8%, 13%11)로 나타난다. 특히 대학교육에 따른 소득 증가 율의 비중은 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수치는 원주민과 비원 주민 간에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넘어 같은 교육을 받더라도 그것을 사회적으로 받아주는 과정에서 또 다른 차별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이것은 사회적 불평등이 인종의 차이에 따라 나타나고 있음을 증명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다.

의료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도 이러한 불평등이 역시 존재한다. 그 것은 볼리비아, 에콰도르, 과테말라, 멕시코, 페루에서 의료보장 혜택 을 받는 사람의 비율이 비원주민의 경우 각각 19%, 12%, 18%, 43%, 47%인데 비해 원주민의 경우는 12%, 12%, 5%, 17%, 41%로 나타나 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¹¹⁾ 페루에서는 교육에 따른 원주민의 소득 증가율이 비원주민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나 는데 그것은 관광산업의 발달로 인해 교육받은 원주민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많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또한 페루에서는 원주민과 비원주민의 학력에 있어서도 다른 4 개국에 비해 가장 낮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지표는 페루 원주민 문제의 특수성을 설명하는 유용한 자료이다.

이러한 지표들은 원주민들이 90년대에 정치적으로 부상하고 중남 미 경제가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삶의 변화 없이 여전히 빈 곤과 불평등의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가의 통합정책은 국가적 정체성의 한 축으로 원주민 문화를 회복하고 경 제사회적 측면에서도 다양한 복지정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적으로 원주민들에 대한 차별적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는 못했다. 오히려 그것은 인종 차별과 같이 실제 존재하는 문제들 을 은폐함으로써 오히려 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되었다는 시각이 70 년대 후반부터 생겨나기 시작했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인종이나 종족의 차이는 메스티소 정체성의 명분 하에서 부정되어왔다. 실제로 나타나는 인종적 불평등 현상은 국가적 통합의 과정이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탓으로 해석되거나 아니면 계급적 불평등 현상으로 설명되었다. 이러한 주장은 빈곤의 감소에 있어 인종적 종족적 문제에 대해서는 눈을 감게 만들었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부터 통합의 이데올로기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의 원인이 상당부분 인종적, 종족적 차별에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고 보다 최근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인종적종족적 차이가 그들 간에 기회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권력관계의 결과라는 주장이 나왔다(De Ferranti, Perry, Ferreira et al. 2004).

특히 1990년대부터 신자유주의가 확산되면서 과거의 조합주의 국가형태 하에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이루어졌었던 사회복지정책들이 긴축정책이라는 명분 하에 사라지게 되고, 효율성의 극대화라는 구실 하에 원주민의 공동소유 토지가 감소함에 따라 원주민들은 이제더 이상 자신의 처지를 채념만 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진보적 계열의 마르크스주의자들 또한 원주민들에 대한 경시 태도는 지배계급의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었다. 그들에게 있어 원주민은 인종적 집단이라기보다는 착취당하는 농민이라는 계급적 범주에서 다루어졌다. 또한 원주민들은 문화적으로 너무 뒤쳐져있기 때문에 혁명적 투쟁에 있어 별로 용도가 없지만 만약 그들이 저항을 시

도한다면 그것은 계급투쟁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주민 문제에 대한 이러한 접근은 지배계층의 기능주의적 시각에 따른 통합정책과 마찬가지로 원주민들의 반발과 부딪쳤다. 근대화론자들이나 마르크스주의자들이나 모두 원주민을 라틴아메리 카 발전의 걸림돌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원주민 문화의 소멸이 발전 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 인식했다. 그들은 라틴아메리카 사회에서 원 주민 문제가 본질적으로 경제적 문제라 인식하고 원주민 문제에 있 어 종족적 문화적 요소의 중요성을 확실히 무시했다. 그러나 1980년 대부터 원주민들은 자신의 문제가 계급투쟁의 한 부분이 아니라 자 신의 문화적 정체성에 바탕을 둔 새로운 성격의 사회적 문제로 다루 어지기를 원했다.

Ⅳ.2. 원주민 인권 문제의 부각

원주민의 빈곤과 사회적 불평등의 지속이 과거 국가 통합정책의 실패를 의미하고 새로운 차원에서 원주민 문제를 제기하는 근인이 되었다면 아래에 설명하는 국내외 환경의 변화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원주민 문제를 문화적 다양성의 차원에서 바라보게 하는 직접적 계 기가 되었다.

1980년대부터 상황은 변화하기 시작했다. 첫째, 국제적으로 냉전이 종식함으로써 라틴아메리카에서도 극단적인 계급투쟁이 막을 내렸 다. 둘째, 세계화의 물결이 라틴아메리카의 원주민 공동체 마을에까 지 밀려와 그들의 전통적인 삶의 방식에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80년대의 민주화 과정 또한 원주민 운동의 부상에 힘을 실어 주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원주민 공동체를 둘러싼 여러 가지 갈등을 증폭시키는 상황에서 원주민들이 저항을 시작됐고 때 마침 이데올로 기 갈등이 막을 내리자 이들의 저항은 당연히 계급적 성격을 띠기보 다 문화적 성격을 띤 저항운동으로 발전했다. 그리고 원주민들의 이 러한 저항운동은 당시 민주화 분위기 하에서 보다 탄력을 받아 나갈 수 있었다.

국제적 환경의 변화도 원주민의 부상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1980년대 이전에 이미 유엔은 제네바에서 개최된 "아메리카 원주민 차별에 대한 국제 비정부 기구회의"-1977년 개최-에서 원주민 지도자들과 국제 비정부 기구 간의 정치적 네트워크와 만남의 장을 열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 그리고 그 결과 1982년에는 유엔 산하에 원주민 문제를 다루는 실무그룹(Working Group)이 설치되었으며 여기서 원주민들의 조직화와 정치적 대표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논의의 장이 활발해짐에 따라 원주민 인권 문제가유엔의 인권논의에 있어 가장 중요한 논제가 되었다.

이와 함께 1989년 국제노동기구(ILO)는 독립국가에 있어 원주민 인권을 규정한 169 조항을 발표했고, 1992년에는 콜럼버스가 아메리 카대륙을 발견한 지 500주년 즉 원주민들에 대한 백인의 착취가 시작된 지 500주년이 되는 해로서 이 지역 원주민들에 대한 다양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었다. 그에 따라 국제연합(UN)은 1990년대 동안기나긴 조사과정을 통해 원주민 인권에 대한 초안적 선언(Declaration on Indigenous Rights)을 작성했고 미주기구(OAS) 또한 1998년 관련하여 초안적 선언(Draft Declaration)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원주민 문제와 관련하여 맨 먼저 제기된 것은 인권의 문제였다. 민주화 과정에서 불어 닥친 인권에 대한 관심은 원주민 문제에서도 주요 이슈로 부각되었다. 이제 원주민들은 스스로를 새로운 사회적 정치적 행위자로 생각하게 되었고 자신들의 저항을 조직화하기 시작 했다.

근대화 패러다임이 더 이상 복잡한 현실을 다 포괄하기에는 한계를 드러냄에 따라 토착적 문화에 기반을 둔 대안적 발전 모델에 대한 관심이 중폭되었으며 그로 인해 전통이 다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그것은 라틴아메리카에서 근대화 모델이 원주민들의 빈곤과 소외 그리고 사회의 전반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데 대한 반동이었다.

보다 크게는 기존의 냉전 구도 하에서 이데올로기 투쟁에 대한 회의와 문명의 발달에 따른 환경문제의 심각함 등이 진보 자체에 대한

회의를 가져오게 만들었으며 그로 인해 진보와 근대화라는 하나의 가치관에서 전통과 다양성에 대한 가치가 다시 평가되기 시작했다. 소수종족그룹의 동화에 의한 민족적 통합이라는 명제는 이제 다양성 에 기초를 둔 국가건설이라는 새로운 목표로 대체되었다. 다수는 여 전히 원주민이 국가적 통합에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일부학 자들과 원주민 단체들을 중심으로 다종족적 기초 위에 국가적 통합 을 시도하는 "문화적 다원주의" 혹은 "다종적 다문화 국가"가 원주 민 문제의 새로운 대안으로 제기되었다. 원주민 단체의 문화적 가치 를 인정하고 그를 문화적 다원주의 입장에서 다른 문화와 동등한 수 준에서 인정하는 것만이 진정으로 원주민의 인권을 옹호하는 것이라 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Ⅳ.3. 경제사회적 인권: 토지의 집합적 소유권 보장

라틴아메리카에서 원주민은 역사적으로 가장 빈곤하고 가장 소외 된 사회계층이었다. 그들은 자신의 토지, 언어, 문화, 통치형태와 같 은 기본적 권리에서 뿐만 아니라 교육이나 보건, 상하수도 등등의 사회적 서비스에서도 심한 차별을 겪어왔다. 원주민들은 "제 2의 계 급"으로서 경제적 교육적 기회조차도 박탈당했다.

특히 신자유주의가 사회복지에 있어서 탈중앙집권주의를 적용함 에 따라 원주민들의 소외는 보다 심화되었다. 그나마 포퓰리즘 체제 하에서 주어졌던 최소한의 사회복지마저도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는 여지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그러나 보다 심각한 문제는 자유주의 개인주의에 따라 원주민 공 동체의 공동 소유 토지가 개인에게 분배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주민 들의 개별 소유 토지가 상업적 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토지집중 과정 을 용이롭게 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원주민의 공 동경작 토지를 보호하기 위한 토지의 집합적 소유권 인정이 원주민 인권의 가장 중요한 이슈중 하나로 등장했다.

원주민들이 요구하는 땅은 자신의 재산인 소유로서의 토지 그 이

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네 가지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첫째는 원주민들이 삶을 영위하는 마을의 의미이며, 둘째는 죽은 자가문힐 공동묘지이며, 셋째로는 신령과 동물의 요정들이 살고 있는 신성한 장소인 동시에, 마지막으로 땔감을 얻을 수 있고 사냥을 하며다양한 약초와 연료를 얻을 수 있는 산이기도 하다. 그것은 단순히소유 개념의 토지를 넘어 그의 역사를 보존하고 그의 과거와 현재와미래를 이어갈 땅이다. 원주민들에게 있어 땅은 그들을 나아준 어머니인 동시에 그들을 깡그리 삼켜버릴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하다. 원주민에게 땅은 공동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공동의 축제가 열리며, 공동의 힘을 보여주는 공간이다(Nolasco 2003, 38).

그럼으로 실제 원주민 공동 소유토지의 소멸을 의미하는 신자유주의적 토지 개인소유권의 확대는 원주민의 삶 자체를 거부하는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 차원에서 원주민 인권이 토지의 집합적 소유권을 가장 우선시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Ⅳ.4. 정치적 인권: 자치권의 인정

1995년 아이티에서 군사정권이 막을 내린 이후 현재까지 라틴아메리카의 어떤 나라에도 군사정권이 다시 들어서지는 않았다. 즉 현재라틴아메리카의 모든 국가는 형식적이나마 자유민주주의의 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민주주의 하나만으로 원주민의 인권이 충분히 보장받을 수는 없다. 실제 신자유주의 개혁을 단행함으로써 과거의 조합주의 혹은 포퓰리즘적 복지시스템을 소멸시킨 많은 민주주의 정부들이 현재 정당성의 위기를 겪고 있기도 하다.

원주민들은 지금까지 그 어떤 정당이나 국가에서도 자신의 대표성을 가지지 못했었다. 극단적인 경제사회적 불평등 사회 그리고 실제 인종적으로 계층화된 사회에서 인종간의 상호 이해나 협력은 사실상 불가능했고 특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측면에서 소외된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조직을 가지지 못함으로써 민주주의 과정에서도 여전히 정치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12)

라틴아메리카에서 원주민 운동이 1980년대 이래 원주민의 권익을 옹호하는데 다소 성공을 거둔 반면 여전히 정치의 가장 주된 행위자 인 정당에 있어서 원주민들의 영향력은 아직 그다지 크지 않다.

심지어 많은 나라들에서 원주민 국회의원들이 점차적으로 증가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의 정치 세력을 형성하기 보다는 각기 다른 정당들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원주민의 인종 적 이익을 대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아직까지 어떠한 정당 도 원주민 선거 연합의 지지를 자동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정당은 하나도 없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원주민의 사회적 요구는 정당을 통 한 정치과정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Iturralde 1998).

그러한 차원에서 원주민들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으로 원주민 운동 단체들에 의해 제기되는 것이 바로 자치성의 개념 이다. 1970년대 원주민 운동이 출현한 이래 원주민 조직들은 지속적 으로 국제법에 기반을 둔 "자결권"(self-determination)을 요구하고 있 다. 원주민운동의 리더들은 소수권(minority rights)에 기초를 둔 다양 한 요구들이 자결권의 요구와 상반되는 통합정책에 기반을 두고 있 다고 비판하면서 자신들의 요구는 소수권이 아닌 자결권, 자치권이 라고 주장한다.

자치는 토지 자원 법 행정까지를 포함하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의 원주민들의 자치적 공간의 확보를 의미한다. 물론 공간의 규모에 대 한 논란-원주민들은 보다 광범위한 지역(예를 들어 주 단위)의 자치 단위를 요구하는 반면 국가는 시단위의 소규모 자치단위를 생각하고 있다-이 존재하지만 이러한 자치의 요구는 90년대 이후 원주민 운동 의 주된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

물론 1994년 볼리비아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자치 또한 원주민 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완전히 효과적인 수단이 되지 않을 수도

¹²⁾ 물론 최근의 에콰도르나 볼리비아 등지에서 원주민 이익을 대변하는 사회운동이 중 앙정치에 등장하여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은 원주민들의 정치적 참여에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되고 있다.

있다. 당시 볼리비아에서는 다문화주의를 헌법적으로 인정하고 탈 중앙집권화를 위해 지방에 다양한 자치권을 부여했다. 그러나 그 결 과는 국가 사회적 서비스의 지역정부에 대한 전가¹³⁾, 지역파워엘리트의 강화와 지역 패트런주의 정치체제의 공고화, 지역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원주민 운동의 분열 등의 역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Sieder 2002, 8-9).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는 원주민에 대한 자치의 부여가 원주민 공동체 지역이 국경과 근접한 경우 또 원주민들이 국경을 인접한 양국에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 민족통일(irredentist)의 이슈가 부각되면서 자칫 국가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자치권은 또한 일부이기는 하지만 인종전쟁에 대한 우려까지도 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원주민 자치구역이 국가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원주민조직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원주민 조직들은 자치권을 정치시스템에 있어 자신들의 대표성의 확대와 자신들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과정에 있어 원주민들의 참여 기회의 획기적 증대로 이해하고 있다.

또한 원주민 조직들은 자신들의 땅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 자치적 영역을 확대하려는 시도와 함께 동시에 보다 큰 중앙정부 조직에 있어 그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에 대한 결정에 효과적 참여를 확실히 하려는 노력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Van Cott 1994, 13). 따라서 원주민들이 정치적 대표성을 확보하고 그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경제사회적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자치만으로는 부족하고 중앙정치에 있어 대표성의 확보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원주민들의 정치적 권리는 지역적 자치를 통한 참여의 확대와 함께 정당을 통한 중앙정치에서의 원주민 대표성이 확보될 때 보다 공고화되어 질 것이다.

그러나 이미 언급한 대로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 조직 형태, 언어

¹³⁾ 그로 인해 국가의 사회적 서비스 기능을 국제적 연계를 가진 NGOs들이 맡음으로써 원주민 운동이 강화되는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와 상징성에 바탕을 둔 원주민 정치 조직이 중앙정치에 있어 얼마나 자신의 대표성을 확대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원주민 조직들에게 는 여전히 도전 과제로 남아있다.

Ⅳ.5. 문화적 인권: 전통의 가치에 대한 존중

서구의 보편적 인권이 주로 개인적 인권을 말한다면 원주민의 인 권은 집합권에 기초를 두고 있다. 물론 원주민들이 보편적 인권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들은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비원주민 그룹과의 관계에서 원주민의 보편적 인권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 인종적 평등 선언에도 불구 하고 현실적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주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자신들의 삶에 대한 비원주민들의 진정한 존중 즉 문화적 다양성의 인정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아직까지 원주민들은 여전히 경멸의 대상이며 원 주민에 대한 사회적 배려는 매우 부족하다. 많은 경우에 스페인어를 모르는 원주민의 재판 과정에서 통역과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가 제 공되지 않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와 원주민 운동가들은 통합정책이 인종차별적인 것으로 원주민들의 권익을 위해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하기 시작했다. 대신에 이들은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문화 간의 대화를 중요시하는 다문화주의, 다원주의, 인종적으로 이질적인 국가 를 옹호하기 시작했다.

문화권이라는 것은 결국 원주민의 전통적 가치에 대한 인정을 말 한다. 그들의 전통적 지식체계, 규범체계, 신념체계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야 말로 진정한 원주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된다. 한 예 로 최근 원주민 주술사들은 자신들의 전통적 치료방식에 대한 전문 적 인정을 요구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자신의 치료 방식은 선 조들로부터 오래된 자연에 대한 관찰 특히 식물(약초)들에 대한 탐 구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끊임없이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전

해져온 비법이기 때문에 충분히 전문적 지식으로 인정받을 만하다는 주장이다.

현대 의학이 화학적 합성에 의한 약품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점에 비해 이렇게 자연에 대한 오랜 관찰의 산물인 원주민의 전통적 치료 술에 대한 인정이야 말로 원주민의 문화적 가치를 인정하는 하나의 흥미로운 사례가 될 것이다.

원주민의 관습법에 대한 인정 또한 문화적 차원에서 원주민의 인권을 말할 때 중요한 하나의 요소이다. 국가의 법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원주민의 관습법을 인정하는 것은 때때로 원주민의 보편적 인권에 대한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즉 관습법의 적용과 보편적인 인권유린의 관계가 정확히 규정하기 힘든 상황에서 관습법의 적용이 인권남용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예를 들어 공동체에 대한 의무와 범법자의 공동체 내에서의 관계 재설정을 우선 목표로 하는 원주민의 관습법에 따르면 가벼운 범죄를 지은 사람의 경우 그를 감옥에 보냄으로써 공동체에서 격리시키 기보다는 체형을 가한 후 그를 다시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더 많은 가치를 둘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체형은 보편적 인권에는 분명히 위반되는 사항임으로 국가법에서는 금지되어 있다. 이러한 갈등은 개인의 자유권을 중시하는 국가법 체계와 공동체에 대한 의무와 범법자의 공동체 내에서 관계 재설정을 우선하는 원주민 관습법 간의 문화적 차이로 인해발생한다. 이런 경우 일정 한계 내에서 원주민들의 관습법을 인정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적 가치를 인정한다는 차원에서 보편적 인권을 넘어서는 진정한 원주민의 인권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어쨌든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국가들은 최근 원주민의 관습법을 제한적이나마 인정하는 개헌을 단행했다. 물론 원주민들의 관습법은 그것이 헌법으로 인정받기 이전에도 많은 원주민 공동체에서 실제로 적용되어 왔었다. 따라서 최근의 관련된 개헌은 다만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의미를 가질 뿐이다.

<표 7> 안데스 국가 주요 원주민 인권관련 입헌 현황

| | 콜롬비아 | 볼리비아 | 에콰도르 | 페루 |
|---------------|--|---|---------------------------------------|--|
| 개헌년도 | 1991 | 1994 | 1998 | 1993 |
| 문화적 다양성 인정 | "국가는 콜롬비 아 국민의 인종 적 문화적 다양 성을 인정하고 보호한다"(7조) | "자유, 독립, 주권, 다인종, 다문화 국가 인 볼리비아" (1조) | "에콰도르는 다문화 다인종 국가이다"(1조) | "국가는 국민 의 인종적 문 화적 다원성을 인정하고 보호 한다"(2조) |
| 관습법 | 헌법과 법에 의 한 제한적 인정 | 헌법과 법에 따른 제한적 인정 | 헌법과 법에 따른 제한적 인정 | 개인의 기본권 에 따른 제한 적 인정 |
| 집합적 소유권 | 인정 | 인정 | 인정 | 인정 |
| 원주민 언어의 지위 | 원주민 지역에 서 공식어 | 특별한 내용 없음 | 원주민 지역에 서 공식어 | 원주민 지역에 서 공식어 |
| 원주민어 교육 | 국가적 실시 | 국가적 실시 | 국가적 실시 | 국가적 실시 |
| 자치권 | 인정, 자치제와 유사한 지역경 비대(resguardos) | 원주민 지역 이나 원주민 공동체는 어 떤 자치적 권 한도 없음 | 원주민 구역은 법령에 의해 결정되는 자치 권을 가짐 | 헌법상으로는 인정하지 않음. 1984년 법은 원주민이나 농민 공동체에 자치권을 가진 자치대표부의 형성을 허용함 |

출처: Van Cott 2002, 47

비록 관습법이 헌법에 따라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실행에 는 여전히 제한적 요인이 있다. 원주민들의 인권을 규정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 169조항은 원주민의 관습법이 보편적인 인권과 충돌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존중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에 따라 관 습법을 인정한 대부분의 국가도 관습법이 정당한 영장집행권과 같은 국가법과 충돌하지 않아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보편적 인권의 중요성이 결코 무시될 수 없는 상황에서 원주민 관 습법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인권과 문화적 상대주의 입장의 중도적 길을 찾는 노력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그를 위해 스타 벤하겐(1996)은 첫째, 보편적 인권의 핵심을 존중해야하고 둘째, 그러나 거기에 더해 소수그룹의 주변적 인권의 존재도 인정되어야하며 마지막으로 주변적 인권이 존재하지 않는 한 보편적 인권도 제대로 향유될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질 것을 제의한다. 즉 보편적 인권과 주변적 인권의 변증법적 관계가 성립된다.

V. 결론

라틴아메리카에서 원주민은 그의 수적 비중에도 불구하고 늘 통합과 소멸의 대상이거나 아니면 사회의 소외된 세력으로 남았었다. 그러나 최근 라틴아메리카에서 원주민은 새로운 사회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요구도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과거 국가의 원주민 통합정책이 원주민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패함에 따라 원주민 문제도 새로운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원주민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계급의 문제가 아니라 인종의 문제 즉 문화적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원주민 인권도 원주민의 문화적 차이를 반영하는 이슈들이 주목받고 있다. 그것은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원주민의 문화적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그것은 신자유주의 시장과 경쟁의 논리에 따른 개인소유권의 인정이 아닌 원주민의 전통적인 집합적 소유권의 인정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정치적 측면에서 원주민의 인권은 선거민주주의와 정당정치를 넘어서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는 자치권의 인정을 요구한다. 문화적 차원에서 원주민의 인권은 역시 보편적인권과 함께 그들 고유의 신념과 지식과 규범 체계를 인정받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원주민 인권 문제에 있어서 문화적 다양성과 차이의 인정이라는 수사적 찬양을 하고 있는 동안 정치경제적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물결 속에 미국화가 완전히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현상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생존조차 어려운 빈궁 속에

서 살고 있는 원주민의 삶을 단순히 "흥미위주의 민속" 수준에서 다 루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반성해야 하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Abstract

En América Latina los indígenas, a pesar de su importancia cuantitativa, habían socialmente sido marginados y sido el objeto de extinción e integración. Pero recientemente ellos empezaron a surgir como una nueva fuerza social. Y sus demandas son diferentes a las del pasado.

En la medida que la política de integración que se aplicó a mediados del siglo XX fracasó a resolver sustancialmente los problemas de los indígenas, éstos ahora se tratan de nueva manera. Los temas de los indígenas se consideran como el problema de raza y de cultura en lugar de clase.

Así, en los derechos humanos de los indígenas la diversidad cultural y el reconocimiento de las diferencias culturales de los otros son bá sicamente los más importantes. El trato digno, es decir, el respeto a su cultura es lo que los indígenas realmente desean.

El derecho colectivo al territorio es una de las grandes preocupaciones indígenas en contra de la distribución individual de la tierra comunal bajo la ideología neoliberal. En el aspecto político los indígenas demandan su derecho a la libre determinación mediante la autonomía criticando el límite de la democracia electoral predominada por los blancos y mestizos. Otros esperan que sus saberes tradicionales, sus creencias y los sistemas jurídicos propios les sean reconocidos y respetados.

116 김기현

Key Words: Indigenous Peoples, Human Rights, Cultural Diversity, Ethnicity, Multiculturalism / 원주민, 인권, 문화적 다양성, 종족성, 다문화주의

논문투고일자: 2005. 07. 02 심사완료일자: 2005. 07. 29 게재확정일자: 2005. 08. 20

참고문헌

- 김세건(2003), 「메스띠소와 원주민 사이에서: 멕시코 국민주의와 원 주민 종족성」, 한국문화인류학, Vol. 36, No. 2, pp. 3-36.
- Barceló, Raquel(2003), "El indio según los intelectuales: racismo, discriminación e identidad en los siglos XIX y XX", América Indígena, Vol. 59, No. 3, julio-septiembre, pp. 40-52.
- Davis, Shelton(2002), "Indigenous Peoples, Poverty and Participatory Development: The Experience of the World Bank in Latin America", in Rachel Sieder(ed.), Multiculturalism in Latin America, England: Palgrave, pp. 227-251.
- De Ferranti, David, Guillermo E. Perry, Francisco Ferreira, et al. (2004), Inequality in Latin America and Caribbean: Breaking with Histrory?, Washington: The World Bank Group.
- Hall, Gillette and Harry Anthony Patrinos(2004), Pueblos Indigenas, Pobreza y Desarrollo Humano en América Latina: 1994-2004, Washington: The World Bank Group.
- INAH(Instituto Nacional de Antropología e Historia)(1987), Dinámica de la Población de Habla Indígena(1900-1980), México: INAH.
- Iturralde, Diego(1998), "Movimientos indígenas y contiendas electorales: Ecuador y Bolivia, Miguel A Bartolomé and Alicia M. Barabas(ed.)", Autonomías étnicas y estados nacionales, México: Conaculta.
- Nolasco, Margarita(2003), "Los derechos humanos y los indios", América Indígena, Vol. 59, No. 3, julio-septiembre, pp. 32-39.
- Marroquín, Alejandro D.(1972), Balance del indigenismo, Mexico: Instituto Indigenista Interamericano, Ediciones especiales No. 62.
- Maybury-Lewis, David(ed.)(2002), The Politics of Ethnicity: Indigenous Peoples in Latin American State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Plant, Roger(2002), "Latin America's Multiculturalism: Economic and Agrarian Dimensions", in Rachel Sieder(ed.), *Multiculturalism in Latin America*, England: Palgrave, pp. 208-226.
- Psacharopoulos, George and Harry Anthony Patrinos(1996), *Indigenous People and Poverty in Latin America*, Brookfield: Avebury.
- Krotz, Esteban(2003), "Hacia una fundamentación ética del derecho a mantener y desarrollar una cultura propia", *América Indígena*, Vol. 59, No. 3, julio-septiembre, pp. 9-21.
- Sieder, Rachel (2002), "Introduction", in Rachel Sieder (ed.), Multiculturalism in Latin America, England: Palgrave, pp. 1–23.
- Skidmore, Thomas E. and Peter H. Smith(1984), *Modern Latin America*, USA: Oxford University Press.
- Stavenhagen, Rodolfo(2002), "Indigenous Peoples and the State in Latin America: An Ongoing Debate", in Rachel Sieder(ed.), *Multiculturalism in Latin America*, England: Palgrave, pp. 24-44.
- Tresierra, Julio C.(1994), "Mexico: Indigenous Peoples and the Nation-State", Donna Lee Vancott(ed.), *Indigenous Peoples and Democracy in Latin America*, NY: St. Martin's Press, pp. 187-210.
- The Economist (2004), "A political awakening", *The Economist*, Feb. 19th, 2004.
- Van Cott, Donna Lee(1994), "Indigenous Peoples and Democracy: Issues for Policymakers", in Donna Lee Vancott(ed.), *Indigenous Peoples and Democracy in Latin America*, NY: St. Martin's Press, pp. 1-27.
- ____(2000), "A Political Analysis of Legal Pluralism in Bolivia and Colombia",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Vol. 32(1), pp. 207-34.
- ____(2002), "Constitutional Reform in the Andes: Redefining

Indigenous-State Relations", in Rachel Sieder(ed.), Multiculturalism in Latin America, England: Palgrave, pp.45-73. Yrigoyen Fajardo, Raquel(2002), "Peru: Pluralist Constitution, Monist Judiciary-A Post-Reform Assessment", in Rachel Sieder(ed.), Multiculturalism in Latin America, England: Palgrave, pp. 157-183.